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원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납세자 | 법인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 법인등록번호 | 111171-0007324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 | |
| 세 무 조 사 내 역 | | | | |
| 조사 대상 세목 | 지방세 관련 세목 | | | |
| 조사 대상 기간 | 부과제척기간 내 | | | |
| 조사 기간 | 2019. 7. 1.(월) ~ 7. 9.(화) 【7일】 | | | |
| 조사 사유 |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 | | |
| 조사 공무원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세무조사팀장 외 6명 내외 | | | |

3. 귀하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1부.
 2. 납세자 권리헌장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세무조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1부. 끝.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문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조사공무원에게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제공은 물론 조사목적 이외의 사적인 편의 제공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조사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4. 조사결과에 불복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사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명 또는 시정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5. 조사공무원의 태도나 언행이 권위적, 위압적이거나 정당한 이견을 제시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조사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나 조사방법상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자료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과장(2133-3380)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공무원 : 서울시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외 3명

(☎ 02-2133-342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납세자권리헌장

서울특별시세의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서울특별시세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되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무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서울특별시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청 령 서 약 서

조사받는 납세자 인적사항

| | | | |
|--------------|--|---------------|--|
| 대 표 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상 호(법 인 명)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주 소 또는 영 업 소 | | | |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20 . . . 부터 20 . . . 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착수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납 세 자 성명 (인)
 세무대리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에게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 귀하

엑셀자료 제출서식

[별표 1] 서울시내 사업장별 현황

| 연번 | 연도 | 사업장명 | 소재지 | 사업장 면적(㎡) | 소유구분 (임대,자사) | 사업자 등록일 | 사업자 등록번호 | 개설 일 | 폐업 일 | 사 업 장 근무인원 |
|----|----|------|-----|--------------|-----------------|------------|-------------|---------|---------|---------------|
| | | | | | | | | | | |

- ※ 2014년 이후 2018년도까지 12월말 기준 각 년도별 작성
- ※ 2014년 이전 개설하여 2014년 이후 폐업하여 없어진 사업장 포함

[별표 2] 소유건물 사용현황

| 구분 지번 (건물,토차) | 해당층 | 용도 | 부서명 | 근무인원 | 면적(㎡) | 직접 사용여부 | 사용자 | 사용(임대)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3 | 사무실 | 경리부 | 20 | 120.55 | 직접사용 | | | |
| | 2 | 공실 | | | 120.55 | 공실 | 공실 | | |
| | 1 | 상가 | | | 120.55 | 임대 | 00상사 | | |
| | 지하1 | 사무실 | 관리사무실 | 5 | 110.23 | 직접사용 | | | |
| | 지하2 | 주차장 | | | 110.23 | 직접사용 | | | |

- ※ 연도별 6월 1일 기준, 연도별 12월말 기준 각각 작성
- ※ 직접사용면적, 임대부분 사용 현황 표기

[별표 3]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 명세서 (해당년도 12/31 기준으로 작성)

(단위 : %)

| 년도 | 법 인 등록번호 | 2014년 도 초 | | 2014년말 | | | 2015년말 | | | 2016년말 | | | 2017년말 | | | 2018년말 | | |
|------------|-------------|--------------|---------|---------|---------|---------|---------|---------|---------|---------|---------|---------|---------|---------|---------|---------|---------|---------|
| | | 주식 수 | 지분 율 | 주식 수 | 지분 율 | 증감 율 | 주식 수 | 지분 율 | 증감 율 | 주식 수 | 지분 율 | 증감 율 | 주식 수 | 지분 율 | 증감 율 | 주식 수 | 지분 율 | 증감 율 |
| 법인 명 | | | | | | | | | | | | | | | | | | |
| 00 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 |

[별표 4-1]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현황 (해당년도 별 작성)

| 연 번 | 사업 장명 | 소재지 | 사 업 개시일 | 연면적 (①) | 비 과 세 면 적 | | | | 과세면 적 ③(①- ②) | 정당 세액 (④) | 기납부 세 액 (⑤) | 납부 일자 | 차인세액 ⑥(④-⑤) |
|--------|----------|-----|------------|------------|-----------|----------|----|------------|------------------------|-----------------|-------------------|----------|----------------|
| | | | | | 기속사 | 구내식 당 | 기타 | 소 계 (②)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2] 주민세(종업원분)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서 (해당년도 및 사업장 별 작성)

| 구분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3월 (정산) | 계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 | | | | | | |
| 상여 | | | | | | | | | | | | | | | |
| 학자금 | | | | | | | | | | | | | | | |
| 인정상여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소계 | | | | | | | | | | | | | | | |
| 비과세소득 | 종식비 | | |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②소계 | | | | | | | | | | | | | | |
| 종업원수 | 관리 | | | | | | | | | | | | | | |
| | 생산 | | | | | | | | | | | | | | |
| | 일용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①-②) | | | | | | | | | | | | | | | |
| 급여지급일 | | | | | | | | | | | | | | | |
| ③산출세액 (5/1000) | | | | | | | | | | | | | | | |
| ④기납부액 | | | | | | | | | | | | | | | |
| 납부일자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작성하되, “근로소득”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는 구체적인 항목을 표시요